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174 호 2019. 5. 16.(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00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0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98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0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86 외 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지 구 92B 12L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 중앙3로 86	2019-05-16	산하지구 중앙을 지나는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4-05-07
2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684-2	울산광역시 북구	동남로 555	2019-05-16	동에서 남쪽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라서 동남로로 부여	2011-02-11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 구 7B 9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4길 15	2019-05-16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부여	2004-12-27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 구 65B 10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 길 10-3	2019-05-16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5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143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 15-73	2019-05-16	예전 지명인 농서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4-09
6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333	울산광역시 북구	안시례 길 69-28	2019-05-16	기존 자연마을인 안시례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7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351-9	울산광역시 북구	달곡1길 52-8	2019-05-16	예전 지명인 달곡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 구 45B 3L(3-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1 길 24	2019-05-16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부여	2004-12-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0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8길 7 외 26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16.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주소	구분	주소	구분			
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8길 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24-10	2019-05-16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8길 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24-9	2019-05-16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8길 1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24-12	2019-05-16	건축물 멸실	
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8길 2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17-5	2019-05-16	건축물 멸실	
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8길 2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20-1	2019-05-16	건축물 멸실	
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0길 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15-16	2019-05-16	건축물 멸실	
7	울산광역시 북구	수박골1길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93-7	2019-05-16	건축물 멸실	
8	울산광역시 북구	수박골1길 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93-6	2019-05-16	건축물 멸실	
9	울산광역시 북구	수박골1길 1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21-8	2019-05-16	건축물 멸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수박골1길 1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19-8	2019-05-16	건축물 멸실	
11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 58-2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5-3	2019-05-16	건축물 멸실	
12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 58-3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5-1	2019-05-16	건축물 멸실	
13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 61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8-3	2019-05-16	건축물 멸실	
14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 65	울산광역시 북구	신청동 38-1	2019-05-16	건축물 멸실	
15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5길 52-3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2	2019-05-16	건축물 멸실	
16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5길 52-5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77	2019-05-16	건축물 멸실	

17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5길 78-9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82-2	2019-05-16	건축물 명실	
18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5길 78-10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83-3	2019-05-16	건축물 명실	
19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6길 26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52-2	2019-05-16	건축물 명실	
20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6길 31-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60	2019-05-16	건축물 명실	
21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6길 31-4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62	2019-05-16	건축물 명실	
22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6길 31-10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66-3	2019-05-16	건축물 명실	
23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6길 32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4-4	2019-05-16	건축물 명실	
24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6길 33-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61	2019-05-16	건축물 명실	
25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6길 37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77-5	2019-05-16	건축물 명실	
26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6길 39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78	2019-05-16	건축물 명실	
27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6길 40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6-2	2019-05-16	건축물 명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 59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2조)
- 나. 위원회(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제3조~10조)
- 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제11조)
- 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제12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홍보실
- 전화번호 : 052-241-7101, 팩스번호 : 052-241-71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건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을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 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및 문화, 관광, 체육관련 시설과 사업
 -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 등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유치활동 등”이란 울산광역시 복구에 기관·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하거나 국가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및 업무에 관련되는 국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